

□ 의료폐기물 준수사항

1. 공통 사항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)

-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이 금지되고, 폐기물처리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
- 의료폐기물 중 인체조직물류(태반 등) 및 동물의 사체를 본인이 인도를 요구할 경우 본인에게 인도하고 인계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
 - 폐기물을 인도받은 자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의 지정장소에 매장하거나 화장장에서 소각처리

2. 변경시 처리증명서류 [변경 전에 확인을 받아야함] -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4항

- 상호, 사업장 소재지 변경 : 폐기물처리계획서 변경 제출
- 확인받은 의료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의 100 분의 30 이상 증가 (최근 1년간 배출량을 기준)
 - 계획서와 수탁확인서 변경
- 배출항목의 새로이 추가 : 폐기물처리계획서 (분석결과서, 수탁확인서 : 추가분에 한함)
-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·운반자·처리자
 - 운반자 : 폐기물처리계획서
 - 처리자 : 폐기물처리계획서, 수탁확인서
 - 종류별처리방법: 폐기물처리계획서, 분석결과서, 수탁확인서

3. 법정교육 (폐기물관리법 제35조)

- 기본적처리증명을 제출한 사업장은 당해 교육을 받아야함.(1회)
-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.

□ 의료폐기물 배출 및 보관

1. 전용용기 사용

- 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, 즉 해당 진찰·치료 및 시험·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종류 별로 적합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
- 봉투형 용기 / 상자형 용기(골판지류, 합성수지류)

구분	용기 사진		해당 의료폐기물
합성수지류 상자 용기			격리의료폐기물, 조직물류폐기물(치아 제외), 손상성폐기물, 액체상태 폐기물
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 용기			그 밖의 의료폐기물

- 전용용기의 바깥쪽에 도형과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하고, 도형색상은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상이

< 도형 및 색상 >



의료폐기물 종류	도형색상	
격리의료폐기물	붉은색	
위해의료폐기물(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) 및 일반의료폐기물	봉투형 용기	검정색
	상자형 용기	노란색
재활용하는 태반	녹색	

※ (도형색상)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할 때에는 붉은색으로 표시

< 취급 시 주의사항 >

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.			
배출자		종류 및 성질과 상태	
사용개시 연월일		수거자	

※ (사용개시 연월일)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기재. 다만,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음 (다만, 보관기한 적용시 봉투형 용기에 기재된 날짜가 기준)

-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관리
-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고,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재사용 금지
- 봉투형 용기는 의료폐기물을 그 용량의 75% 이상이 되도록 넣어서는 안되며, 위탁처리시 상자형 용기에 담아 배출
 - ※ 상자형 용기는 75% 이상으로 넣을 수 있음
-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해야 함
 - ※ 봉투형 용기만을 사용하여 담고 이를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옮겨 담아 배출하는 것은 가능
- 봉투형 용기에 별도 거치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, 거치대는 봉투형 용기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로 하고,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(투명 플라스틱통 등)이 바람직하며 사용 후 소독 필요
- 의료폐기물을 담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는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해야 하며,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에 따른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함
-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
 - ※ 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의료폐기물 도형, 취급시 주의사항 표기

- 전용용기에 서로 다른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 가능, 다만,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 금지
 - 격리의료폐기물과 혼합된 경우 격리의료폐기물로 표기
 - 보관기간, 보관방법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
 - ※ 사용개시일은 혼합된 것 중 가장 빠른 것으로 표기
- 치아는 조직물류이지만 합성수지류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다른 의료폐기물과 혼합 보관 가능
-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별도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제품만 사용(적정하게 등록된 업체만 제조 가능)
- 재활용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내부 주머니에 의료기관명, 중량(g), 발생일자, 담당의사명을 기재한 후 1개씩 포장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시설에 보관
-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,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 하여야 함

2. 보관 기준 및 방법

-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정해진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음. 다만, 천재지변, 휴업, 시설 보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예외 가능
-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, 보관시설은 전용의 냉장시설,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*로 구분
 - ※ 의원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, 혈액원, 검역소, 동물검역기관, 동물병원, 국가나 지자체 시험연구기관,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소, 장례식장, 교도소·소년교도소·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, 기업체 부속 의무시설(100㎡ 이상),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, 노인요양시설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가능
- 보관기간 적용기준
 - 배출자의 보관기간은 감염성폐기물이 발생되어 전용용기에 담는 시점부터 적용
 - 보관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보나, 폐기물 처리업소(자가처리시설 포함)의 경우 해당 공휴일에 처리시설을 가동한 때에는 그 공휴일을 만료일로 봄(보관기간중의 공휴일은 기간에 포함)
- 소규모 배출자는 조직물류 이외의 부패·변질의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가능
- 소규모 배출자는 별도의 보관장소(자체에서 일정한 장소를 지정)를 마련하여 밀봉된 전용용기를 보관
 - 보관창고의 바닥 및 내벽은 내수성자재(타일, 콘크리트 등)로 설치하되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 유지

○ 부패·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전용의 냉동시설에 보관, 그 외의 폐기물은
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

< 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시설, 전용용기 및 보관기간 >

종 류		보관시설	전용 용기*	도형 색상	배출자 보관기간
격리의료폐기물		○ 조직물류 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 - 전용 냉장시설(4℃ 이하) ○ 그 밖의 폐기물 -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	상자 (합성수지)	붉은색	7일
위해의료 폐기물	조직물류	○ 전용 냉장시설(4℃ 이하) ※ 치아 및 방부제에 담긴 폐기 물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	상자형 (합성수지) ※치아 제외	노란색	15일 ※치아: 60일
	조직물류 (재활용 하는 태반)	○ 전용 냉장시설(4℃ 이하)	상자형 (합성수지)	녹 색	15일
	병리계	○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	봉투형	검정색	15일
			상자형 (골판지)	노란색	
	손상성	○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	상자형 (합성수지)	노란색	30일
	생물·화학	○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	봉투형	검정색	15일
			상자형 (골판지)	노란색	
	혈액오염	○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	봉투형	검정색	15일
			상자형 (골판지)	노란색	
일반의료폐기물		○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	봉투형	검정색	15일**
			상자형 (골판지)	노란색	

* 액체 상태 의료폐기물은 상자형(합성수지) 사용

** 일반의료폐기물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,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
 보관하는 경우 30일까지 가능

○ 보관창고 기준

- 바닥과 안벽은 타일·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,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 유지
- 소독약품 및 장비 비치
-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, 외부인의 출입 제한, 주 1회 이상 약물소독
- 보관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·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

【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】

	의료폐기물 보관표지	
	①폐기물종류:	②총보관량 : 킬로그램
	③보관기간:	④관리책임자:
	⑤취급시 주의사항 ○보관 시: ○운반 시:	
	⑥운반장소:	

- ※ ① (설치위치)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
 ② (규격) 가로 60cm이상×세로 40cm이상(냉장시설은 가로 30cm이상×세로 20cm이상)
 ③ (색깔)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

○ 냉장시설

- 4℃ 이하의 설비를 갖추고,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하며 정상 가동되는 온도계 부착

□ 의료폐기물 배출시 주의사항

※ 의료폐기물 관련 행정처분 주요 사례 [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7조 제1항 및 제2항]

-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(과태료 200, 400, 1000만원)
 - 1개월미만 초과시, 1개월이상 3개월 미만 초과시, 3개월이상 초과시
- 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 500만원)
 -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종류별, 성질·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위반 (과태료 300만원)
 - 격리된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고, 적정 보관용기(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)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보관 표지판 무설치 및 표지내용 허위·부실 작성 (과태료 100만원)
 - 보관시설 및 장소에 보관표지판을 설치하고,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해 표지판에 기재해야 한다.
- 전용용기 표기사항 부실기재 (과태료 100만원)
 - 의료폐기물 사용개시일 및 보관기간 등을 전용용기에 표기해야 한다.

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(제3판) 발췌

□ 격리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<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>

【발생 및 보관】

- (배출)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(병원내 이동 최소화)하고 밀폐(전용봉투 + 전용용기 2중 밀폐, 폐기물 투입 전과 밀폐 후 소독 처리)
 - ※ 전용봉투가 찢어지거나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없는 의료진 도는 폐기물 수거업체 등이 사용한 개인보호구(마스크, 보호복) 등에 대해, 합성수지 전용용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합성수지 전용용기 대신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할 수 있음
- 확진환자의 남은 음식물도 구분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용기에 투입 후 처리
 - ※ 병원 전체가 격리(공동격리)되어 발생 음식물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, 소독 후 일괄 소각 처리(지자체 공공소각장 또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)
- 침대 시트, 베개 덮개, 담요 등은 세탁 가능 직물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온수세탁 후 재사용

<참고>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환자 이용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

- 침대 시트, 베개 덮개, 담요,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온수세탁
-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, 베개, 쿠션 또는 카펫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
⇒ 자세한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·중앙사고수습본부 소독 안내 지침 참고

○ (보관) 해당 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, 병원 내 보관 최소화

- 병원내 보관 시 지정된 보관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
- 조직물류 형태는 전용 냉장시설(4℃ 이하)에 반드시 보관하고, 부패위험이 없는 격리폐기물도 최대한 냉장보관이 원칙
- 보관창고는 매일 소독하고,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은 구조 및 외부인 출입 제한

【수집·운반】

-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한 상태로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하여 소각처리
- 밀폐된 적재함에서 운반 중 4℃ 이하 유지, 적재함 사용시 마다 약물소독

【소각처리】

- 해당 폐기물 입고 즉시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바로 소각로 투입

※ 처리 상황과 최종 처분여부는 환경공단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

【현행규정보다 강화된 코로나-19 격리의료폐기물 관리방안】

구분	배출자 보관	운 반	처 리
격리폐기물 현행규정	○ 7일까지 보관 ○ 합성수지 전용용기 ○ 전용 보관창고 (조직물류 냉장보관) ○ 보관창고 소독	○ 냉장운반 ○ 임시보관(2일)	○ 처리기한 2일 ○ 전용보관 창고 (조직물류 냉장보관)
격리폐기물 관리강화	○ 당일 위탁처리 (1~2일 이내 보관) ○ 냉장보관 원칙 ○ 전용용기 투입 전·후 소독	○ 임시보관 금지, 당일 운반 ○ 사용시 마다 차량약물 소독	○ 당일 소각처리

※ 단, 특별자치도와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 지역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보관(4일 이내) 하되 신속 운반·처리(2일 이내)